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1458 판결 [(소멸시효연장을
위한)건물명도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재

7. H

8. I

피고 1 내지 5, 7,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황석보, 이호철

피고 1 내지 5, 7, 8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3622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62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로 위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래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10㎡(69평)(2층 J호, K)을,

나.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ㄹ, ㄷ,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4.38㎡(83평)(2층 L호, K)을,

다.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ㅈ, ㅊ, ㅋ, ㅌ, ㅎ,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1.48㎡(67평)(2층 M호, K)을,

라. 피고 H, I는 별지 도면 표시 ㅂ, ㅁ, ㅅ, ㅇ,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8.76㎡(45평)(2층 N호, O)을,

마. 피고 E, F은 별지 도면 표시 ㄹ, ㄷ, ㅁ, ㅂ,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8.10㎡(69평)(2층 P호, Q)을,

바. 피고 G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28.10㎡(69평)(2층 R호, S)을
각 인도하라.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전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나4739), 상고(대법원 2014다1084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전소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M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 H, I은 이 사건 전소판결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피고 G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로 각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멸시효 완성 중단을 위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은

별지